

의안번호	2202737
의 퇴 인	서영석의원
회 답 일	2024.9.20.
추 계 번호	24C2894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 4,6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10억 4,600만원(연평균 2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 지정·운영 등 (안 제47조의3)	673	-	-	-	-	673	135
의약품 판매 (안 제50조)	373	-	-	-	-	373	75
합계	1,046	-	-	-	-	1,046	2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의3 (의약품관리종합정보 센터의 지정·운영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(제4항)	재량지출
2	안 제50조 (의약품 판매)	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동물병원의 명칭, 연락처, 의약품의 명칭, 수량, 판매일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함 (제3항)	의무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7조의3 (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 지정·운영 등)	○	○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
2	안 제50조 (의약품 판매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산망 시스템 연계 및 고도화에 따른 비용으로 함
 -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유통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, 유통정보 등의 파악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가재정소요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산망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유통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전산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가정
 - 시스템 고도화 작업은 추계 첫해에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유지·관리 비용은 기존 시스템 유지·관리 비용에 포함하여 별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전산망 고도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2024년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및 「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」 기준을 적용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의약품관리정보센터의 지정·운영 등

- 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의견등을 참고하여 추계
 -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방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정함
 - 개정안에 따른 시스템 연계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「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」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
 - 시스템 연계 작업은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진행하며, 연계를 위한 비용은 총 6억 7,300만원으로 추계됨
 -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현행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

[표 2]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전산망의 의사처방관리시스템 연계에 따른 소요 비용 산출내역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보정계수							금액
	기능점수(FP)	단가(원)	규모	연계복잡성	성능	운영환경호환성	보안성	
시스템 연계	642.5	553,114	1.1054	1.12	1.05	1.06	1.00	673

자료: 「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」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의약품 판매

-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산망에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유통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의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전문가 의견등을 참고하여 추계

- 개정안에 따른 시스템 연계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
- 추가재정소요는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산망에 원활하게 보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관련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에 따른 직접 인건비로 구성됨
 -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은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커스터마이징 작업에 따른 인건비로서,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 시스템과 의약품정보시스템간 대용량 파일 송·수신에 용이한 ESB(Enterprise Service Bus) 활용을 가정
 -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투입률 100%를 전제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측 전문가의 월 평균임금에 예상 작업 소요기간을 곱하여 추계함
 - 직접인건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산망에 전문의약품 보고내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구축하는 등의 작업에 따른 인건비로서,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투입률 100%를 전제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데이터베이스아키텍처의 월 평균임금에 예상 작업 소요기간을 곱하여 추계함
- 시스템 연계 작업은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진행하며, 소프트웨어 구매 및 구축 등의 고도화 작업을 위한 비용은 총 3억 7,300만원으로 추계됨
 -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현행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

[표 3] 약국 개설자 보고시스템 구매 및 구축에 따른 소요 비용

(단위: 백만원, 개월)

구분	내용	단가	기간	금액
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인건비 (A)	시스템 연계방식 보고 솔루션(ESB) 소프트웨어 구매 및 커스터마이징	9,695,100	3	29
직접 인건비 (a+b=B)	동물병원 공급내역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(a)	11,152,750	2	22
	전산점검 배치, 모니터링 개발 (b)	7,128,530	11.5	82
	소계 (a+b)			104
제경비 (C)	직접 인건비의 154%			161
기술료 (D)	(직접 인건비+제경비)의 30%			79
합계 (A+B+C+D)				373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결과, 2026년 10억 4,6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10억 4,600만원(연평균 2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·운영 등 (안 제47조의3)	673	—	—	—	—	673	135
의약품 판매 (안 제50조)	373	—	—	—	—	373	75
합계	1,046	—	—	—	—	1,046	2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지관리의 비용을 기존 시스템 운영비용에 포함하고,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예상 작업 기간을 토대로 인건비를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유지관리 비용 및 작업 기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

